

□ 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2020. 4. 29.(수) 14:00 ~ 15:00, 대학본부 5층 회의실
- 참석인원: 14명
 - 당연직위원(7명): 김귀룡, 최영석, 김은영, 윤종민, 임창빈, 최상훈, 양동석 위원
 - 일반직위원(7명): 유상용 위원장, 서용석, 김경석, 김진우, 성기정, 김지한, 이형연 위원
 - 불참위원(1명): 채현숙 위원
- ※ 배석(6명): 신광수(간사, 재무과장), 신용관(재무1팀장), 임병훈(재무2팀장)
연해원(교무1팀장), 황주식(재무과 예산), 박종현(재무과 결산)

□ 심의·의결 안건 및 결과

- 2020학년도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집행계획(안): 원안 의결
- 2019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원안 의결
- 2020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원안 의결

붙임 2020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2020년도 제2회 재정위원회 회의록

1. 일시 : 2020. 4. 29.(수) 14:00 ~ 15:00

2. 장소 : 대학본부 5층 회의실

3. 참석인원 : 14명

- 당연직위원(7명): 김귀룡, 최영석, 김은영, 윤종민, 임창빈, 최상훈, 양동석 위원
- 일반직위원(7명): 유상용 위원장, 서용석, 김경석, 김진우, 성기정, 김지한, 이형연 위원
- 불참위원(1명): 채현숙 위원

※ 배석(6명): 신광수(간사, 재무과장), 신용관(재무1팀장), 임병훈(재무2팀장)
연혜원(교무1팀장), 황주식(재무과 예산), 박종현(재무과 결산)

5. 심의 안건

- 2020학년도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집행계획(안)
- 2019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 2020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6. 회의내용

- 위원장: 인사말씀, 성원 보고 요청
- 간사: 재적위원 15명 중 14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함.
- 위원장: 개회 선언

위원 변동에 따라 김은영, 임창빈, 양동석, 김경석 위원 소개.

국립대학 회계법 제9조 회의록의 작성과 공개에 관한 조항에 대해 정하고 회의 진행.

이 회의록에 서명할 간(間)서명 위원 3명을 정하도록 되어 있음.

전 회의에서 일반직 위원 중 교원 1명, 직원 1명, 학생 1명이 서명을 하였음.

이번 회의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하고자 함. 교원 서용석 위원, 직원 김진우 위원, 학생 김지한 위원을 간(間)서명 위원으로 의결.

회의록 공개는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개인의 신상 노출 등의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으로 의결하겠음.

안전심의를 실시하겠음.

000
121

121 ← 12

12

제1호 안건으로 2020학년도 교육·연구·학생지도비 집행계획(안)을 상정함.

- : 제1호 안건 설명
- 위원장: 제1호 안건은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제22조(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의 지급)에 의거하여 교직원의 교육·연구·학생지도에 대한 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지급 계획임. 안건에 대해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람.
- 전년도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 삭감 건으로 교수들이 상당히 불편해 하고 있음. 추후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수립이 잘되었으면 함.
- : 교육·연구·학생지도 비용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대략 100명 정도의 교원 연구논문 실적이 초과되어 예산이 부족해진 것임. 이에 예산이 남은 직원의 학생지도비용을 교원쪽에서 지급 가능하도록 예산 총액 범위 내 조정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예산이 부족하여 1인당 감액하여 지급한 것으로 예산 삭감이 아닌 조정임. 아울러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의 예산은 전년도 결산액을 기준으로 편성하게 되어 있어 예산 증액은 불가함. 따라서 올해의 경우, 교원 연구영역의 경우 100프로 지급하지 않고 80프로만 선 지급하고 나머지 20프로는 예산 상황을 감안하여 지급할 계획임.
- :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은 본 취지가 교수의 교육연구활동을 돕기 위한 것이나 지급을 위한 제약조건이 너무 많음. 교육부에 건의하여 효율성 있게 집행이 되고 교수의 교육연구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함.
- 교육부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면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은 기존 기성회 수당의 급여보조성 인건비에서 사업비성으로 성격 변경되어 지급하기 위해서는 실적이나 결과물을 받아야 하므로 현행 규정하에서는 변경이 어려움. 총장협의회 차원에서 교육부와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 :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은 작년기준과 동일하게 올해 지급되는 것인지?
- 예산은 동일하며, 올해 연구영역의 경우 80프로 선 지급하고 20프로는 추후 정산해서 지급계획임. 예산 범위 내라면 전액지급 가능하나 올해처럼 예산이 부족하다면 조정이 불가피함.

說

491212

3

- 신입교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므로 비용 지급 예측이 정확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전액 지급이 불가능하다면 당사자들에게 미리 통지가 되었으면 함.
- : 최대한 정확하게 예측하여 교수들에게 사전 안내를 하겠음.
- 교육·연구·학생지도비용은 계획서 제출과 실적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우리대학의 경우, 평생사제제도가 존재하므로 모든 교원에게 전액 지급하는 것인지?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인지?
- 모든 교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니며, 실적에 따라 감액하여 차등 지급하고 있음.
- 위원장: 기타 의견이 없으시면 제1호 안건을 원안대로 확정하도록 하겠음. 제2호 안건인 2019학년도 대학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 제2호 안건 설명.
- 위원장: 제2호 안건은 국립대학 회계법 제21조(결산)에 의거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재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세입·세출 결산 내역, 이월경비 명세, 예산의 전용·이용·이체명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음. 안건에 대해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람.
- 작년에 비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가 무엇인지?
- 세부내역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전임교원 및 비전임교원의 강사료 집행 잔액 및 대학회계직원의 인건비 집행 잔액이 발생했으며, 수입 대체기관의 세입 증대로 인해 공공요금 대학 징수분 증가로 차액이 발생함.
- 교원이나 직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인건비가 집행 잔액으로 남아있다면 예산 집행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 당초 예산 편성 시 소요 예측되었던 강사료 및 직원 인건비 집행이 적게 발생하였으며, 재무과에서 긴급재정으로 편성한 것은 아님.
- 기관 운영 입장에서 대규모 강의가 재정 절약 기회가 될 수 있으나,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소규모 강의 폐강 및 강좌수를 축소시키는 것은 교육의 질적인 면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음.
- 교무처·총무과 등 사업부서에서 미리 계획을 세웠던 것보다 인건비가 덜 집행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이며, 차후 예산편성 시 협의하여 보완하겠음.

21

12/12

1

- 수준 높은 강의를 제공하는 것은 대학의 의무이므로 가급적 예산 편성 시 고려되어야 하고, 예산 및 결산의 오차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함.
- 교원은 교무처에서, 직원은 총무과에서 인건비를 편성 요구하나 보통 수요보다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함. 공무원이 아닌 직원의 경우 매년 임금협상을 통해 임금을 정하는데 임금의 상승폭은 협상결과에 따라 달라지므로 여유를 두고 인건비를 편성해야 하며, 교원의 경우도 인건비를 감하여 편성한다면 실제 강의가 더 필요함에도 강사수당이 없어 강의를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수요액보다 인건비는 조금 여유 있게 편성하고 있음.
- 작년의 경우도 집행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인지?
- 인건비 집행 잔액은 항상 발생하며, 작년 순세계잉여금이 올해보다 감소한 이유는 세입이 줄은 측면임. 발전기금재단에서 대학회계로의 이전수입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등록금 수입 역시 예측보다 줄었음. 반면 올해의 경우 등록금이 수입이 예측대로 세입 되었고, 기획처의 정부재정지원사업을 적극 지원 받아 대학회계 예산이 불용되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대비 많이 발생한 것임.
- 제출자료 중 순세계잉여금의 구성내역은 있는지?
- 대학회계 결산 시 ^{필요한} 자료만 구성되어 있어 순세계잉여금의 구성내역은 없으나 필요시 추후 자료 제공하겠음.
- 집행 잔액에 대한 구성내역이 있었으면 함. 작년에 8억이 남았었는데 올해 34억이 남았다는 것은 재정운동이나 소요비용이 변화가 있다는 것임. 올해 예산 편성 시 전년도 예산 대비 감액하여 편성한 것으로 아는데 예측보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면 본예산 편성 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 학생 등록금 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음. 휴학이나 제적의 경우, 매년 변동 폭이 매우 큼. 아울러, 작년 8억의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년에 비해 적은 금액이 남은 것임. 작년은 발전기금재단 전입금이 덜 발생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남은 것이고, 올해의 경우 예년보다 집행 잔액이 조금 많이 남은 이유는 인건비 집행 잔액 발생분과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 측면에서 예산이 중복 지원되다 보니 각 사업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측면이 있음.
-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예산 예측이 잘못된 것임.

219

4R/4/2

4

- : 19학년도 특징 중 하나는 수입대체기관에서 예측한 세입보다 더 많은 세입이 발생하였음에도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대비로 편성되어 세출이 적어진 측면 등 세부명세로 여러 가지 요인이 시너지가 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것임. 불용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여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사업부서에 잔액 지출을 업무 지시할 수는 없으며, 사업부서는 자체계획에 맞추어 집행하였고 이에 예상보다 많은 집행 잔액이 발생한 면이 있음.
- 최고경영자과정의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수강 인원이 많이 줄었음에도 30프로 공통경비를 제외하는 것인지?
- 제3호 안건 내용으로 추후 논의했으면 함.
- 위원장: 김귀룡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제2호 안건에 대해 별도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음.
다음은 제3호 안건인 2020학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음.
- 제3호 안건 설명
- 위원장: 국립대학 회계법 제17조(추가경정예산) 및 국립대학 회계법 시행규칙 제18조(추가경정예산)에 의거하여, 2019학년도 대학회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예산 반영과 성립전 예산 편성 내역을 예산에 반영하는 내용임. 안건에 대해 위원들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람.
- 의과대학 3호관 건립부지 매입 건 관련하여 의과대학 구성원 의견 수렴은 된 것인지?
- : 학장회의를 거쳐 구성원 의견을 수렴하였음.
- 교육부가 우리대학 시설 관련 예산 지원 시 의과대학 건립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계상하고 지원 하는 것인지?
- 국가지원금으로 의과대학 건립비용 170억 정도 확보되어 있음.
- 매년 우리대학 시설 예산 지원 시 의대 건립비용 부분은 제외하고 예산이 지원될 예정인지?
- 의대 3호관의 경우 2017년에 이미 예산 지원이 확정되었음. 의대 3호관 예산으로 인해 추후 정부 시설 예산 확보 시 영향을 끼칠 우려의 경우, 단정하여 말할 수는 없음. 의대 3호관의 경우 그 당시 가장 긴급하고 중요하다고

212

212

212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을 요청했으며, 추후 긴급하게 시설 예산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에 예산 설명 후 배정받기 위해 노력할 것임.

- 차후 시설 예산 확보 시 의대 3호관 건립 비용이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주셨으면 함. 코로나 사태 대응 예비비 편성의 경우, 예측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동의함. 다만 코로나 대응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계획이 나오지 않아 아쉬움. 예를들어 비대면 강의 시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과 늘어나는 항목이 있음에도 예산 대응이 되고 있지 않음. 그러므로 본부에서 각 학과마다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예비비를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대책을 대학본부에서 수립해줬으면 함. 오히려 실험실습의 경우 코로나로 인한 분반 실시 등 수업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음.
- : 코로나로 인해 학생생활관이나 평생교육원의 수입이 줄어들었는데 대처방안이 있는지?
- 수입대체기관의 경우, 명확한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음. 수입대체기관의 수입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학회계로 이전되는 수입대체기관 세입의 10~30프로 공통경비도 ~~감소~~ 예상됨. 수입대체기관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지출을 위해 대학회계에서 관련 경비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교육부 및 기재부 지침상 대학회계에서 수입대체기관 직접 지원은 불가함. 아울러 외국인 대학생들의 휴학이 증가하는 등 우리대학의 자체수입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록금 수입 감소가 예상되어 대학회계 재정보전도 고려가 되어야 함.
- 위원장: 제3호 안건에 대해 별도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음. 이것으로 충북대학교 재정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음.

